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18

# 대 전 고 등 법 원

## 제 1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9누1208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주식회사 A<br>[redacted] |
| 피고, 피항소인 |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 |
| 제 1 심 판 결 | 대전지방법원 2019. 8. 8. 선고 2019구합100454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20. 4. 23. |
| 판 결 선 고 | 2020. 5. 14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6. 26.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거부처분 중 세액 76,530원 및 46,6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18

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### 2.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

○ 제5쪽 제6행 및 제10쪽 제6행의 각 "보증요율" 앞에 "심사등급에 따른"을 추가한다.

○ 제5쪽 제7~8행의 "1.249/100/365일 × 937일"을 "1.249/100 × 937일/365일"로 고쳐 쓴다.

○ 제6쪽 각주 9)의 제3행 말미에 "아래 표 순번 1, 2의 2013. 5. 23. 및 2013. 8. 12. 납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2013. 10. 7. 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3. 10. 7.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."를 추가한다.

○ 제10쪽 제7~8행의 "0.755/100/365일 × 926일"을 "0.755/100 × 926일/365일"로 고쳐 쓴다.

○ 제11쪽 각주 16)의 제1행 말미에 "아래 표 순번 1, 2 중 2014. 5. 20. 전에 납부된 부분은 2014. 5. 20.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."를 추가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18

○ 제17쪽 제12~14행의 "앞서 보았듯이 … [redacted]공사에게 완납함으로써," 부분을 "앞서 보았듯이 2013. 10. 4.자 및 2014. 5. 19.자 각 대출약정에서 약정한 대출금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출금 전액을 E에 상환함으로써"로 고쳐 쓴다.

○ 제19쪽 제5행의 "제1, 7호"를 "제1, 4, 7호"로 고쳐 쓴다.

○ 제19쪽 제5~6행의 "유사한 금융비용" 뒤에 "내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· 수수료"를 추가한다.

○ 제19쪽 제13~14행의 "충족하여야"를 "충족하고 이를 인정받아야"로 고쳐 쓴다.

○ 제20쪽 제6행의 "금융비용" 뒤에 "내지 위 각 토지의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조달을 위한 금융보증의 대가로 지출된 비용"을 추가한다.

○ 제22쪽 제5~7행의 "사후적으로 매수인인 … [redacted]공사에게 완납함으로써" 부분을 "원고 회사가 앞서 본 2013. 10. 4.자 및 2014. 5. 19.자 각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변제기 도래 전에 그 대출금 전액을 E에 상환함으로써"로 고쳐 쓴다.

○ 제22쪽 제12~13행의 "취득과 더불어 … 변제함에 따라" 부분을 "취득 이후에 원고 회사가 앞서 본 각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변제기 즉 주택사업금융보증기간 만료 전에 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함에 따라"로 고쳐 쓴다.

○ 제22쪽 밑에서부터 제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한편, 이 사건 각 보증료의 환급 여부나 그 환급 범위가 원고 회사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발생되거나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. 대한주택보증이 원고 회사에 발급한 2013. 10. 7.자 및 2014. 5. 20.자 각 주택사업금융보증서나 이에 첨부된 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 등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, 원고 회사가 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대상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그 잔여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급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18

하기로 하는 내용이나 그 환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찾아볼 수 없고, 또 설사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일 뿐이다. 』

○ 제22쪽 마지막행 첫머리의 "②"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, 이 사건은 토지의 '취득세에 있어서' 취득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유(보증료의 환급)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부가 쟁점이다. 그런데 』

○ 제24쪽 제7~9행의 "2013. 5. 23.자 및 … 대금을 감액받기" 부분을 "앞서 본 각 대출약정이 정한 대출금 변제기 도래 전에 그 대출금 전액을 E에 상환한 것은, 위 대출금 이자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"로 고쳐 쓴다.

**3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광섭

판사 임현태

판사 성하경